

2026년도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차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9. 4.

2026년도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추천기관(단체)	위촉일	비고
		총 10명		
1	강현기	검단구의회	2026.8.31	
2	고혜빈	서인천지역사무사회	2026.8.31	
3	김범중	인천서부교육지원청	2026.8.31	
4	김성웅	검단구출입기자단	2026.8.31	
5	김현채	바르게살기운동검단구협의회	2026.8.31	
6	이동혁	인천지방변호사회	2026.8.31	
7	이미숙	검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8.31	
8	이승호	검단구주민자치협의회	2026.8.31	
9	이애숙	검단구통장연합회	2026.8.31	
10	주경숙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6.8.31	

*성명 가나다순 배열

제1차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원의 2027년~2030년(4년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1차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회의개요

- 일 시: 2026. 8. 31. (월) 14:00 ~ 16:29
- 장 소: 검단구의회 3층 의원간담회장
- 참 석 자: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참석)
- 내 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및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잠정금액 결정
 - 주민의견 수렴 방법 결정 등
- 순 서
 -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구청장) → 위원 선서 → 개회 → 안건 논의 → 폐회

□ 회의결과

- 의정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 위 원 장: ○○○○ 위원, - 부위원장: ○○○○ 위원
- 회의 공개 여부: **비공개**
-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잠정금액 결정
 - 2027년 월정수당: **월 2,667,234원 (8.5% 인상)**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 주민 의견수렴방법 결정: **공청회**
- 제2차 회의 일정: 2026. 10. 16.(금) 14:00 의원간담회장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

일 시	2026. 8. 31. (월) 14:00 ~ 16:29		장 소	의원간담회장
참석현황	재 적	참 석		불 참
	10	10		0
안 건	(부)위원장 호선, 회의 공개 여부 결정,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잠정금액 산정, 여론조사방법 결정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간사	○ 회의 진행 및 참석자 소개			
구청장	○ 위촉장 수여 및 인사 말씀			
간사	○ 위원 선서			
○○○위원	○ 선서문 낭독			
간사	○ 다음은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 이신 ○○○○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 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적인원 위원 10명 모두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네 ○○○위원님께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	○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 ○○○위원님께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우리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없으면 추천하신 이 세 분 위원님 중에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 투표하기에 앞서 추천받으신 분들의 소견을 듣고 투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견 발표해 주세요~
○○○위원	○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단구의회 추천으로 참석하게 된 ○○○○ ○○○○회장 ○○○입니다. ○ 저는 처음에 명단을 보고 너무 이제 지역에서 많은 봉사하시고 이제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추천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준비를 해오지는 못했습니다. 혹여라도 추천이 된다면은 저희 검단구 의정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 다음은 ○○○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위원	○ ○○○○○○ ○○○○○○ 회장을 보면서 ○○○ ○○○ 회장 우리 ○○○ 위원님께서 추천했는데 먼저 첫 회이고 중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뽑는 거 말고 오늘 좋은 심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 저는 오늘 임시로 나이 많은 관계로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의 인사말로 그냥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 네 투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4표 ○○○ 위원님 4표 ○○○ 2표 그래서 두 분 중에서 다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위원	○ 저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임시위원장	○ 모두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재투표할 거 없이 ○○○ 위원님께서 위원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 이제 부위원장님을 또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 ○○○대표요
임시위원장	○ ○○○위원님께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 예산을 수반하는 결정이므로 세무사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 ○○○의원님께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이로써 세 분이 추천이 되셔서 다시 또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추천받으신 부위원장님들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 ○○○○○○○○○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고요. ○ 제가 이번에 이 검단구로 다시 근무가 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만약에 제가 된다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정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위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 다음은 ○○○위원님으로부터 추천받으신 ○○○위원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 활동만 한 15년을 한 단체 대표로서 검단구의 여러 가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오늘도 눈 크게 뜨고 확인하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 위원장님과 함께 또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 다음은 ○○○위원님으로부터 추천받으신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	○ ○○○○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 표결하겠습니다. ○ ○○○위원님 3표, ○○○위원님 4표, ○○○위원님 3표 이로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 그러면 다시 또 저희 위원장님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영광스러운 자기의 제가 강의해도 될지 모르겠는 이런 역할을 맡겨주신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 너무 각 사회에 구성별로 되게 유능하신 분들이 와주셨는데 제가 너무 중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 이제 자료를 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 의정비가 적절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시위원장	○ 다음은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	○ 안녕하세요. 처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부위원장이 될 줄은 모르고 인사말 이런 것도 준비를 못하고 왔는데요. ○ 위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정 의정비가 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 선출되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주재하에 우리 인천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비 결정을 위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마치며 이어서 위원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 (의사봉 3타)
위원장	○ 바쁘신 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입니다. ○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우리 검단구의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1대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검단구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위원장	○ 첫 번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정비심의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위원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록 위원 명단 및 결정 금액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결정하는 회의 공개 여부는 회의 현장에 외부 참관인의 참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 추가 자료 3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	○ 어떤 걸 비공개를 하면 좋을까요?
서기	○ 회의 자체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 회의를 비공개 결정하였더라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	○ 회의록은 공개 하는데 회의를 공개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	○ 회의 자체를 외부 참관인이 참석을 하는건지 이제 공개 회의인건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서기	○ 네네
○○○위원	○ 오늘 회의는 우리 10명의 위원들이 회의를 주재하고 나중에 법에 따라서 이후에 공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	○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저희 회의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저희 지금 위원님들 세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 기타 의견 없으심으로 저희 회의는 전원 찬성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위원장	○ 예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 안건은 의정비 잠정금액 결정 및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기	○ (의정비 관련 규정 설명)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방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설명드리신 바와 같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금액에 대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우리 심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산정한 2027년 월정수당 금액이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는 경우와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경우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위원님들 간의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회의 자료 3페이지에 보주시면은 결정 유형에 대해서 2027년 확정 금액 결정, 28년에서 3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 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월정수당에 대해서 0.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28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로 자동으로 인상이 되는 건지..
서기	○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 저희가 연도별로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서기	○ 예를들면 의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은 2027년도 결정 금액이고요. ○ 그 이후에 3년간 금액은 동결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같이 인상을 하든지 그 두 가지를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 3년간 (인상) 금액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서기	○ 동결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4년간 쭉 진행되는 겁니다.
○○○위원	○ 오늘 결정하는 건가요?
서기	○ 오늘은 잠정금액 결정입니다.
○○○위원	○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는거죠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 둘 중 하나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위원	○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서기	○ 주민 의견 수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월정수당이 2027년 확정 금액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하지만 3.5%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의정활동비는 그 조항이 없으므로 1만원이라도 인상되면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위원	○ 제가 이거 일단 의회의 의견은 오늘 봤습니다. 비교를 위해 나눠준 자료에는 남동구, 미추홀구, 서해구, 부평구가 있습니다. 검단구의회에서 나눠준 자료는 의회 의원들이 요렇게 올려주시길 바라는 걸로 올린거죠?
서기	○ 네 맞습니다. 참고용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
○○○위원	○ 그래서 삭감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거고, 인상하려면 공청회를 해야하는 데 삭감은 어떤가요?
서기	○ 월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3.5% 미만이면 생략이 가능하지만 의정활동비는 삭감을 할 경우에도 의견 수렴을 해야된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 제가 2년인가 3년 전에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제가 공부하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오셨겠지만 월정수당은 저는 급여 수준으로 봤고요. ○ 의정활동비는 이 사람들이 검단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연구 활동을 할 거냐 그런 식으로 검토했었는데 당시에 구의회 기준으로 20만 원이 올라갈 때 제가 참여했었던 회의이고 그때 40만 원을 올릴 수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과 주민 의견으로 20만 원 인상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40만 원을 올린다고 보면 서해구 58만 주민 기준으로 연구 활동비로 구의원당 가져가는 금액이 560원 정도였어요.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그럼 박카스 하나 좀 사드리는 금액이다라고 제가 이때 발언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만 원을 인상할 수 있는 폭이 있고 구 의원님들이 8분이다 보니까 12개월을 하면은 192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구수가 27만3735명으로 나누면 1년간 의원님들이 70원 우리 세금으로 이제 받으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검단구가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다 보니까 좀 후하게 생각해 주셔도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나눠 주십시오
○○○위원	○ 이거는 의정비하고는 조금 별개적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인천시 의원 중에 한 분이 좀 뭔가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 그런 상황에서 의정비나 이런 건 그때 다 지급받아 갔잖아요. 그 의원들은 그 의원들은 그럼 일도 안 하는데 가져갔다는 거죠. ○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검단구의회에 있는 의원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의정비를 지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조례안을 만들어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건지 오늘하고 상관없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서기	○ 그 부분은 의회 사무과에서 관련된 업무라서 제가 다음 회의까지 조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는 부분만 좀 답변을 드리면 당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 시의원께서 시의회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당시에는 이제 시의회 다수당의 의견을 좀 따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가결이 안 됐습니다. ○ 최근에 다시 한 번 그 의견을 발표를 하셔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월정수당과 그런 모든 수당에 대해서 지급 정지하는 조례를 발의하셨고 통과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	○ 가결되었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가결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에는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근데 검단구 외에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지 영향을 받지않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위원	○ 질문할 게 있는데 월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 기준 이제 여러 가지 내역을 알려주셨잖아요. ○ 근데 이게 지금 알려주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인구수 재정력 보수인상률 이런 반영되는 게 우선순위인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수를 늘어놓으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서기	○ 우선순위는 아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서 반드시 고려해야되는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는 내용이고요. ○ 위원님들의 재량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저희가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제가 공문을 여기에 출력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그러면은 월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늘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4년 동안 하게 되고, 의정비가 한 번 어쨌든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겠죠. 이제 다음 저희 위원회든 저희 다음 기수 위원회든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추후에라도 검단구 의회의원님들이 지금 8명인데 사실 저희가 인구수라든가 규모가 사실 의원님 한 명당 인원이 많잖아요. ○ 그럼 의회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묶여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게 조금 왜냐하면 추후에 의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검단구의 예산 부담도 더 커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 건지...

발언자	발 언 내 용
서기	○ 의정비는 지방선거가 있는 4년에 한 번 구성됩니다. ○ 그래서 이번에 구성되어서 심의의결된 의정비는 4년 동안 적용을 받게 되고요. ○ 의원 정수는 이제 4년 후에는 충분히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2026년도 대비 2030년 여러 가지 저희도 인구수라든지 재정 자립도가 변경이 되겠죠. ○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새로운 지방선거 이후에는 바뀐 의원 정수와 함께 다시 한번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에 정해지는 의정비는 4년 동안 적용됩니다.
○○○위원	○ 나눠준 자료에 보면은 우리 검단구가 분구되면서 의원수는 8명인데 그래서 1인당 주민 수가 3만 4천 명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새로 분구되는 시점에서의 의원들의 활동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비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은 의원님들의 의견 자체는 지금 이게 맞다. 그러면 본인들은 어쨌든 5500 정도를 받았으면 하는 상황인데 재정자립도의 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인상을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제 개인적인 저는 활동비는 지급을 해주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렇게 올렸을 때도 한 4700선이 나오는데 위원님들은 본인들은 많이 받고 많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의견은 좋지만 저희 재정자립도 입장에서는 좀 의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는 활동비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 월정수당 이외에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후 보고라든가 증빙이라든가 감시 시스템이 있는지 좀 여쭙보고 싶거든요.
서기	○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구성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으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이제 나가는 되게 됩니다
○○○위원	○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사후 보고 시스템이 있는 건지...

발언자	발 언 내 용
서기	○ 의정활동비의 어떤 결산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지 않고 이제 지방의회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본회의가 있고 상임 위원회를 했고 얼마나 발의를 했고 그런 실적으로 나가지 그 금액에 대한 어떤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 그럼 결국엔 어디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서기	○ 개인적인 의회의 결산이라든지 구청의 결산 부분은 어떻게 검증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 회의 때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 상식적으로 예산을 쓰면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첨부해서 어느 회사나 다 이렇게 내놓은 거 이제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서기	○ 이제 재정 공시가 다 되거든요. 이제 의회 사무과도 그렇고 이제 재정 공시가 공식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재정 공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내고장 알림이라고 해서 모든 예산서 세출 예산서 모두가 공시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시가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골프장을 썼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지하는 체계가 없다는 건지...
서기	○ 아마 그 항목에 준하여 써야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를 들면 사무 관리비인데 다른 어떤 지출 항목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 그래서 그런 거에 준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좀 의회사무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	○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활동비를 너무 올리면 이게 어디 썼는지 모르고 누가 함부로 올릴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 자료 6페이지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시 금지 사항에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금지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을 어떤 것을 지칭을 하시는지 이게 최저 시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서요~
서기	○ 저희는 생활임금 금액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시 일반 회사원들이 다니는 그런 소득 금액 예를 들면 저희는 대기업도 많고 그런 소득 등을 말하는 걸로...
위원장	○ 아니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좀 이제 참고 자료로 가져온 게 제가 저는 이제 회사 직장인이지만 이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또 하고 있어서 이게 항상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월정비가 너무 이제 택도 없이 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 그래서 월정비가 지금 연봉이 2800만 원 수준인 거잖아요. 연봉 2900만원 수준인거죠 지금 현재.
서기	○ 아닙니다
위원장	○ 월정비를 빼고
위원장	○ 아 의정활동비 빼고 월정수당만이요
서기	○ 의정비 자체는 월정수당 플러스 의정활동비입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예 지금 월정비랑 저는 의정활동비를 별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서 월정비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거를 급여로 이제 저는 아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지 제일 급여를 못 받으시는 경비 팀원님이 대원님이 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298만 2180원을 받으시거든요. ○ 근데 이제 저희 대원님들하고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이게 여기 계신 각계 또 이제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의원님들께 저희가 부탁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시에 문자를 보내요. 아침 6시에 그럼 답변이 6시 반에는 오더라고요. 이분들은 의원님들은 근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 아침 새벽 6시에 공사장 시끄러우면은 이거 들어봤냐라고 녹취해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 대비 급여가 현저히 좀 낮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컴퓨터를 갖고 온 이유가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 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좀 미리 못 보고 여기서 좀 계산을 했는데 의원님들은 0.5%가 올라야 월급여가 247만 원이더라고요.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보셔야되는 부분 아닌가 3년인가 2년 전에 얘기할 때는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 의원들 하는 거 뭐 있다고 의정활동비 올려주고 하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 급여가 낮으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서 좀 그러지 않냐 급여가 높으면 대기업 퇴사하신 임원분들 교수 퇴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뛰어들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논의도 좀 오고 가고 있었습시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서기	○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및 공공임대주택 청약 등에서 이제 기준으로 활용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말을 하고요. ○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약 335만원, 4인 가구는 약 762만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방의회 의원은 비전임직이며 원칙적으로 겸직 및 영리 행위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렸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 이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 급여를 받으면서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은 그 직원들과 그다음에 임시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의 급여 차이는 있어야 된다. 임시직이라고 항상 왜 적어야 되냐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우리 좀 위원님들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좀 활발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 이게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오늘 심의를 해서 다음달 9월에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위원장	○ 오늘은 잠정금액을 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공청회로 할지 여론조사를 할지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위원	○ 그럼 오늘 회의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네 오늘 임의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민분들한테 정해드리는 거죠.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	○ ○○○위원인데요. 저는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서는 이 월정수당을 별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합쳐서 했을 때에는 지난번 대비해서 지금 의회에서 올라온 의정비 의견은 천팔십만원 정도 지금 증감이 되는 거거든요.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월정수당에 대해서 의회에서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 왜냐하면 아까 원칙적으로 겸직이 되기 때문에 일이 소득 플러스 또 별도의 소득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다수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저희 의회 그러니까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화하면 오지는 않더라고요. 전화하면 모르겠어요.
○○○위원	○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저는 이제 오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나 하는데 콜백이 안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 네 ○○○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데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부분을 얼마나 썼는지 쓴 금액 전체 이제 배당받으면 그 중에 얼마나 썼는지 남은 돈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야 잠정금액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받았는데 그중에 실제로 80만원 쓰고 나머지 20만 원은 그냥 개인이 그냥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희가 액수를 정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저희가 오늘 임의 금액을 산정하려면 ○○○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필요하신데 사무과에 급히 참고할 만한 내용을 예를 들면 기존에 서해구에서 공무원분이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오시는데 외부인이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기사에 뜨는 거 보면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고 보여지거든요. ○ 해외 연수 같은 경우가 특히 민감한 게 가시게 되면은 얼마의 금액에 뭘 타고 가서 비즈니스를 탔냐 뭘 했냐 나오는 부분이 내역이 안 나오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위원	○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이거를 한 150만원 탔다고 치면은 150만원 다 쓰셨는지. 부족분이 혹시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서기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검단구 의회는 7월 1일 개원했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게 지금 7월 8월...
위원장	○ 지난 회기 기준으로 여쭙보시는거죠?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기존 서구 사용 내역 이 부분을 좀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서기	○ 그거는 제가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관서가 좀 달라져가지고 서해구는 지금 백삼십만원인데 지금 저희는 새로 개원한 초대 의회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비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 서구의 사용내역 자료를 보고 싶은 겁니다.
서기	○ 그건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서가 달라져가지고 ○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거고 물가상승률 반영이 되어서 개정이 된 부분 이어서 제가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위원장님 그럼 제가 의회사무과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저희 잠시 15분 동안 정회하는 데 이견 없으십니까? 다녀오실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위원장	○ 저희 이제 개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위원장	○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 위원님께 답변이 되었고 그다음에 ○○○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저희 전체 위원님들께 해 주셨습니다. ○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요. 의견을 다수결로 하거나 일단은 먼저 의견을 좀 청취를 한 다음에 다수결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지금 정리한 거는 일단은 ○○○ 위원님께서서는 의정활동비 20만 원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고 월정수당은 구의회에서 제안한 28.5%보다는 좀 더 낮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 위원님께서서는 의정비는 140만원가량 그다음에 월정액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금액 상향은 하시는데 많이는 이제 구의회 부분은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 그다음에 ○○○ 부위원장님께서서는 의정활동비 관련해서도 20만원을 다 올리는 건 그렇고 10만 원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셨었나요?
위원장	○ 금액은 말씀 안 해 주셨고요. 예 죄송합니다. ○ 혹시 금액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	○ 의정활동비 140만원이요
위원장	○ 혹시 월정수당은 생각하신 퍼센테이지 있을까요?
○○○위원	○ 퍼센트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 인상이 높다 보면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을 때도 이게 많이 삭감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저희 회의 자료 공무원분들께서 주신 자료는 3.5에서 5% 정도 올릴 수 있는 기준인 거고 구의회에서는 28.5%까지 올려줬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사이 5%에서 28.5% 사이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 아니면 3.5에서 28.5% 정도 이상? 3.5 이상으로요?
○○○위원	○ 3.5 이상으로요
위원장	○ 그러면 3.5 이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거죠? 140에 3.5프로 이상
서기	○ 검단구의회 의견은 참고사항입니다.
위원장	○ ○○○위원님은 의정활동비랑 월정수당을?
○○○위원	○ 방금 여쭙봤었는데 이게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이미 올해까지 작년까지 지급이 됐던 금액이라고 합니다. ○ 그럼 여기서 물가 상승 보통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공무원들은 다른 직장인을 정하는 건데 이걸 퍼센테이지가 너무 물가 상승률 비율보다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물가 상승률이 뭔가 약간 높이는 그 정도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은 저기 공무원분들 보수인상률이 3.5%였는데 5%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원	○ 네 그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의정(활동)비 관련해서는 동결이신가요?
○○○위원	○ 예 맞습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위원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위원	○ 네 저도 동결했으면 좋겠고
위원장	○ 의정비랑 월정수당으로 나눠서 여쭙볼게요. 의정비는 저희가 뺑원에서 20만원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	○ 20만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의정(활동)비는 20만원이고요. 월정수당은 공무원분들 보수 인상률이 3.5%였습니다.
○○○위원	○ 저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3.5%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글썄요. 20만원 선에서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의정비 20만원 별도로 3.5% 별도로. ○○○ 위원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위원	○ 의정활동비는 의회에서 제안한 15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월정수당 공무원에게 올라가는 3.5%로 맞추면 좋겠어요.
위원장	○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위원	○ 저도 일단은 의정활동비 다른 의원님들이랑 마찬가지로 150만원 선으로 올라가는 게 저희 이제 검단 민원 건들도 많을 거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고요. ○ 월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을 남동구가 지금 가장 높은 것 같아요. ○ 기준 6월 30일 기준으로 주신 자료 보시면은 253만정도 되는데 이거를 상한액으로 잡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사실 인구를 대비하면 서구랑 저희랑 연수구. 요 정도 한 3개 구가 좀 높은데 서구랑 저희는 이제 동일한 거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보다 월정수당이 적어요. ○ 근데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연수구가 또 일이 없냐 많냐 이런 걸 따질 수는 없고. ○ 연수구는 월정수당이 224만원 정도가 되고요. 남동구는 오히려 인구수 대비해서 월정수당이 많은 편이에요. 이 이상으로 올리는건 제가 퍼센테이지로 계산해본건 아니고 상한액을 요정도로 잡고 하는게 저희도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위원장	○ 서해구 기준으로 해서 6.5% 인상을 하면 261만8068원은 방금 말씀하신 남동구 월정수당 정도가 나옵니다. ○ 그럼 6.5% 정도 상한으로 그거를 상한선으로... ○ 그럼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	○ 지금 그래도 가이드라인으로 받은 지역 수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저희 앞으로 지금 입주하는 신도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원1인당) 인구수 순위는 계속 1위를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 근데 그 안에 저희가 의정비 비교했을 때는 지금 3위 정도라서 어느 정도 높이는 거에 다 의견이 동의가 가서 의정활동비는 의회의 의견대로 150만 원으로 잡고 월정수당은 5% 정도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6.5% 정도 상한액 잡는 거에 동의하거든요. ○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하향될 걸 감안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증가율을 높게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저는 아까 지방자치법규 조례를 개수를 이제 염두에 뒀습니다. ○ 제가 다른 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검단구에는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세분은 재선 이상이지만 나머지 다섯 분이 처음이세요. 처음이신데 조례 개수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절대 이분들이 일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일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의정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만원 인상이 제 의견이고요. ○ 저는 월정수당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좀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 위원님께서도 이제 사무국(과)이랑 해서 많이 알려주셨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정수당은 이분들이 순수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300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제 의견이니깐요. ○ 어차피 여기서 저밖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관철 안 될 거고 저는 22.5% 정도 인상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은 이제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 이거 용지에 적어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적었는데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할까요? ○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는 다 기록을 했고 약간 저기 뭐야 좀 ○○○위원님하고 ○○○위원님 약간 낮게 약간 높게 그 부분만 퍼센테이지가 좀 애매해서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	○ 어떻게 이제 아까랑 애매하게 맞춰졌는데 그 말의 뜻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차후에도 이제 문제이긴 하나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서부터 앞으로 3년 이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 뒤에 것까지 어떻게 돼야 될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245만8280원은 큰 그릇으로 보면 구비가 없어서 좀 힘들긴 하겠으나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떤 월정수당이나 활동비가 조금 올라가면 내가 더 열심히 의욕 있게 일을 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 이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28.5% 너무 높아 너무 높아서 제가 300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22%가 나오더라고요. ○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지만 이것도 많다고 하면 어차피 회의에 의해서 내는 거니까 어쨌든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 예예. 그러면 ○○○위원님은 저랑 유사하게 22% 정도고 ○○○ 위원님
○○○위원	○ 예 그러면 아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뜻을 모으는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비는 최대 올린 것 중에서 150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야 또 본인들의 활동도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공무원 수준에서 3.5%나 아까 우리 ○○○ 위원님께 말씀했듯이 어차피 한번 공청회에 올라가서 한번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높게 잡아서 그거는 우리끼리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3.5에서 6%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를 할 때 광역시 내 자치구 이제 평균 금액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개가 되거든요. ○ 별첨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비교 그룹별 이런 것들도 행안부에서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는데 광역시 및 자치구 44개가 평균 금액인데 만일 3.5%를 인상할 경우에는 이제 연간 의정비가 이제 4900만원 정도 평균입니다. ○ 월정수당이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도 고려를 같이해 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평균 금액이 좀 있거든요.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그래서 저희 논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단 의정비 관련해서 20만원 이상 인상을 하자라고 의견 주신 분은 저,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총 7분이십니다. ○ 그래서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20만원 인상으로 제안을 이제 할 거고요. ○ 이제 월정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상 폭이 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지금 5%에서 6.5% 정도 말씀해 주신 분이 세분 그러니까 기존 3.5% 인상분보다 이상인 분이 저 포함해서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분이 3.5% 이상을 말씀해 주셨고 3.5%를 말씀해 주신 분은 총 4분이십니다. ○ 그러면 저희가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니까 7분이시니까 지금 네 둘 다 만족을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 35% 인상이라고 안 했어요.
위원장	○ 아까 3.5% 말씀해 주신 분들이 누구시냐면은 ○○○위원님, ○○○ 위원님, ○○○위원님
○○○위원	○ 아니아니 저기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3.5% 이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 3.5% 이상으로 이제 해주신 분들이 두 분이 더 여덟 분이 되시고 근데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주민분들께 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 이제 네 엑셀을 지금 끼워 넣고자 하고 있는데도 이게 어려운 게 저희가 평균으로 보면은 이제 22%를 둘이 얘기하는 바람에 평균으로 치면 8.65% 인상분이 되거든요. ○ 그럼 어떻게 평균본을 써도 될지 아니면은 맞춰야될지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네 8% 인상을 했을 때는 지금 인상금이 월정액이 265만 4942원이 됩니다.
위원장	○ 그래서 총액으로 저희 의회 총액으로는 1887만 9590원이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 27년도에 저희 예산은 630억 정도가 올해 산출된 예산이고요. 26년도 하반기만 그러면 평균치로 하면....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저희 평균치로 하면, 평균치가 8.65% 8.5% 치만 조금 예 그 정도 됩니다. ○ 8.5%면은 25만원 인상분 그럼 저희 위원님들 다 괜찮으시면 저희 이걸로 이제 네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 그러면 총액이 한번 얼마인지 정확히 다시 한번 그러면 합산해 가지고 인상을 까지 한번 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위원장	○ 8.5%요.
서기	○ 다시 한 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의 월정수당은 245만 8280원입니다. 여기서 8%로 인상한 금액은...
위원장	○ 8.5%요
○○○위원	○ 간사님이 계산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	○ 월정수당 2,458,280원에서 8.5%인상한분 12개월, 의정활동비 150만원에서 12개월...

발언자	발 언 내 용
서기	○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서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월정수당이 지금 서구는 245만 8280원이고 8.5%를 올린다면 266만 7천 233원입니다. ○ 의정활동비를 최대 올리면 150만원이고요. 총 월 지급액은 416만 7천233원이 고요. 연 지급액은 5천만 6796원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토탈 금액이 한 500만원정도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면요.
위원장	○ 네 애는 저희 정한 대로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잠정금액으로 가결하는 부분은 없고요. ○ 그다음에 저희 의견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7년 했고 28년에서 2030년 전년도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결을 해야되니까?
서기	○ 아까 말씀 주셨던 그 금액으로는 2027년도 확정 금액이고요. ○ 의정활동비는 정액이니까 150만원으로 지급되지만 월정수당은 만일 이것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2028년도는 2028년도랑 30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이 되는 겁니다. ○ 예를 들면 2027년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4%라면 그 금액에서 4% 오르고 그다음에는 5% 오른다면 해서 그만큼 오르고...
위원장	○ 아까 그 부분이 동결도 가능하다?
서기	○ 동결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 그래서 혹시 동결에 의견이 있으신 분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공무원 인상분 따라가는데 이견 없으시면은 이후 연도는 공무원 인상분에 따르는 걸로 저희는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들	○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수렴방법입니다. 공청회하고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 아까도 잠시 정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이 부분 투표 안 하고 그냥 거수로 해도 상관없죠? 네 의견 따로 의견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	○ 만약에 공청회를 하면 어디에서? 여기에 회의실에서 어제 가 봤을 때도 보니까 자리가 부족했어요
서기	○ 네 처음 여론조사 기간을 진행하고 이제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주재하시지만 발표자는 신청을 받거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장이 추천을 하십니다. ○ 저희가 14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합니다.
위원장	○ 그래서 공청회가 좀 주민분들이 의견을 서로 제시하시기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	○ 아니 여론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서기	○ 전문여론기관에 맡겨서 하고요. 아까 ARS가 아니고요.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도 표준안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얼마큼 올랐는지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 CATI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500여명 이거는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명수고요.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질문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 여론조사로 하는 거나 공청회를 하는 거나 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서기	○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공청회는 예산은 따로 없고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 예 이거는 여론조사보다는 공청회를 하는 게 저는 의견 수렴이 좀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위원님 따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 아니 여론조사를 해도 우리가 우리 매번 선거 때 보면 여러 번 전화 왔잖아요. ○ 그런 거 대부분 다 전화 안 받잖아요. 네 안 받으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보다는 한 자리에 모여서 공청회로 의견 수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들	○ 네 찬성합니다.
○○○위원	○ 5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500명 이상이 들어갈 사람 혹시 있나요?
○○○위원	○ 아니 아니 그건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이고
서기	○ 참고로 지금 제가 혹시 몰라서 대회의실은 9월 28일 9월 29일 그다음에 10월 1일 10월 2일 이렇게 잡아놨고요. 14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9월 7일 정도는 공고가 들어가야 돼요. ○ 그래서 조금 일정이 조금 빠듯한 부분이 있고 만약 공청회로 선택을 하신다면 저희가 2차 회의는 사실은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청회 이후에 의견을 반영을 해서 10월 초반에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을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만일 여론조사를 한다면 세부 조사 내역을 또 이제 의결을 해야 돼서 9월 초에 한 번 더 회의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여론조사는 한 2주간 정도 참고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 공청회에 다섯 분 의견 주셨고요. 아직 의견 안 주신 분 다섯 분 계십니다. ○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 위원님 공청회 혹시?

발언자	발 언 내 용
○○○위원	○ 궁금한 게 있는데 공청회는 그럼 참여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서기	○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고를 통해서 얼마큼 많으신 분들이 오실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따로 신청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약 100여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 저희가 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요.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 시간 관계상 8분 의견주셔서 공청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월정수당하고 의정비 관련해서 의결을 이제 같이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 27년도 인상 기준으로 8.5%를 했을 때 월정액은 숫자 틀리면 다시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 숫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266만 7234원 소수 점 틀릴 수 있습니다. 인상을 8.5%고요. 월정수당이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관련해서는 기존 130만 원에서 150만원 정액으로 올리는 것으로 저희 27년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잠정 제안 금액이고요. ○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주신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 없으시면은 가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위원장	○ 10월 16일 괜찮으신가요? 다들 괜찮으세요? 시간대는 어느 정도 괜찮으세요? 지금 오늘처럼 2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일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 이로써 제1차 검단구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